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

##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심사보고서

2025. 10. 27.

사회건설위원회

#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5년 10월 2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5년 10월 15일

라. 상정일자: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10. 20.) 상정 의결

#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조미연 복지국)

가. 제안이유

-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는 실질적인 조직으로 그 역할과 활동내용을 명시하여 현행화하고 그에 따른 현행기구의 회의를 명시 함으로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문구정비(안 제1조, 안 제3조, 안 제8조제5항, 안 제14조제1항)
- 연합회 명시, 역할과 활동 신설 (안 제2조제5호, 제8조의2)
- 해당 법률 명시 (안 제13조제2항제1호)
- 회의 명시 (안 제14조제2항제4호, 제5호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류데레사)

#### □ 개정 배경 및 취지

- 본 조례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“대표협의체”라 한다),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“동 협의체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(2025. 7. 25.)되었음.
- 한편, 영등포구는 동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으로 구성된 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”도 별도로 구성·운영하고 있으나, 연합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.
  - 집행부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, 서울시 자치구 중 영등포구를 포함한 19개구에서 연합회를 구성·운영하고 있음.
  -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으로 구성·운영되고 있는 연합회의 기능 및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- 또한, 동 협의체 및 연합회의 회의 개최 근거를 안 제14조(회의 등)에 반영함으로써, 현행 조례 제19조(회의 수당) 본문에서 규정한 “회의”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회의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.
  - 한편, 서울시 자치구 중 동 협의체에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곳은 10개구로 파악됨.

#### □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1조(목적)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“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, 동 협의체”에서 “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로 정비하여 문장을 간결화 하였으며, 조직이 신설·개정될 때마다 조문을 개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입법 경제성을 높임.
- 안 제2조(정의)제5호는 및 안 제3조(협의체 기구)는 현재 실질적으로 구성·운영하고 있는 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”의 정의를 신설하고, 협의체 기구로 명시함.

- 안 제8조(동 협의체)제5항은 안 제8조의2(연합회) 조문을 신설함에 따라, 해당 조문을 인용하여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높임.
- 안 제8조의2(연합회)는 연합회의 설치 근거, 기능 및 구성을 명시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제도화 및 체계성을 높임.
  - 한편, 연합회 구성 방식 및 선임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“부패영향평가”의 개선 의견을 반영함
- 안 제12조(위원의 위촉 해제)는 인권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함.
- 안 제14조(회의 등)는 동 협의체 및 연합회의 회의를 각각 연 6회, 연 3회 이상 개최하도록 명시함.
  - 동 협의체는 법 제41조제7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“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”고 명시하고 있어, 법령상 동 협의체의 회의 개최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. 이에 실질적으로 정기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.
  - 한편, 연합회의 경우 법률상 설치 근거는 없으나, 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운영기구로서 회의를 개최해 온 점을 고려할 때,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에 그 운영 및 회의 근거를 명시한 것은 조례의 체계와 목적에 부합하며,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#### □ 검토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도적 근거가 없던 연합회의 기능과 구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합회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,
- 또한, 동 협의체 및 연합회의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명시하여 회의를 공식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625호
--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10. .  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는 실질적인 조직으로 그 역할과 활동내용을 명시하여 현행화하고 그에 따른 현행 기구의 회의를 명시함으로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문구정비(안 제1조, 안 제3조, 안 제8조제5항, 안 제14조제1항)
- 나. 연합회 명시, 역할과 활동 신설 (안 제2조제5호, 제8조의2)
- 다. 해당 법률 명시 (안 제13조제2항제1호)
- 라. 회의 명시 (안 제14조제2항제4호, 제5호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 
제41조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  - 1) 행정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 - 2) 부패영향평가: 개선 의견 반영
  - 3) 성별영향분석평가: 개선 사항 없음
  - 4) 인권영향평가: 검토 및 시정 요청
- 라. 입법예고(2025. 8. 28. ~ 9. 17./20일간) 결과: 해당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, 동”을 “영등포구”로 한다.

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”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, 구-동 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사업 협력기반을 마련하고자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한다)”를 “한다),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8조제5항 중 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 할 수 있다”를 “위촉직 위원장은 제8조의2 연합회에 당연직 위원이 된다”로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연합회) ① 동 협의체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 및 사업연계, 협력기반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합회를 둔다.  
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 상호 정보공유 및 사업연계, 협력 지원 등에 관한 사항

2. 동 협의체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,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

3. 사회보장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동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연합회 위원은 각 동 협의체 위촉직위원장으로 구성하며, 연합회의 임원은 회장 1명, 부회장 2명, 감사 1명으로 호선하고, 사무국장 1명은 회장이 추천하여 선임한다.

제12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

제13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고 한다) 제41조 제2항에 관한 사항

제14조 제1항 중 “**실무분과의 회의**(이하 “회의”라)”를 “**실무분과, 동 협의체, 연합회 회의**(이하 “회의”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동 협의체 : 연 6회 이상

5. 연합회 : 연 3회 이상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<u>영등포구</u>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,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 1 조 ( 목적 ) ----- ----- ----- <u>영등포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 2 조 ( 정의 )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”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, 구-동 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사업 협력기반을 마련하고자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.
제3조(협의체 기구) 지역사회보장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“대표협의체”라 한다),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,	제3조(협의체 기구) ----- ----- ----- -----

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“동 협의체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8조(동 협의체) ① ~ ④ (생략)

⑤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, 업무를 총괄하며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 할 수 있다.

⑥ ~ ⑧ (생략)

<신 설>

----- 한다),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-----.

제8조(동 협의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 
----- 위촉직 위원장은 제8조의2 연합회에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⑥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2(연합회) ① 동 협의체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 및 사업연계, 협력기반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합회를 둔다.

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 상호 정보공유 및 사업연계, 협력지원 등에 관한 사항

2. 동 협의체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,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

3. 사회보장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동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	<p><u>③ 연합회 위원은 각 동 협의체 위촉직위원장으로 구성하며, 연합회의 임원은 회장 1명, 부 회장 2명, 감사 1명으로 호선하 고, 사무국장 1명은 회장이 추 천하여 선임한다.</u></p>
제12조(위원의 위촉 해제) (생 략)	제12조(위원의 위촉 해제) (현행 과 같음)
1.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 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	<u>1.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 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 행하기 어려운 경우</u>
2. 위원이 사망하거나,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	<u>2.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 시한 경우</u>
3. 4. (생 략)	<u>3. 4. (현행과 같음)</u>
제13조(직원) ① (생 략)	제13조(직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	② ----- ---.
1. 법 제41조2항에 관한 사항	<u>1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 · 제 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고 한다)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 항</u>
2. 3. (생 략)	<u>2. 3. (현행과 같음)</u>
제14조(회의 등) ① 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 의(이하 “회의”라 한다)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 다.	제14조(회의 등) ①----- ----- <u>실무분 과, 동 협의체, 연합회 회의 (이하 “회의”라 -----.</u>

<p>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(분과장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③ · ④ (생략)</p>	<p>② -----.</p> <p>-----.</p> <p>-----.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동 협의체 : 연 6회 이상</p> <p>5. 연합회 : 연 3회 이상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내역

- 영등포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  
(20,000원 x 325명 x 6회 x 90%)  
: 35,100천원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(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#### 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)

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,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,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영등포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에 따른 소요예산  
: 35,100천원(1억원 미만)

### 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국 복지정책과 허은주
연락처	02-2670-3981